

[국책과제분쟁] 연속된 과제의 중복성 판단기준 + 후행 과제의 중복성 인정 사례: 대전

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1. 중복성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2. 검토 과제 사업계획서 '3-3 수행기관별 업무분장'과 검토대상 과제 사업계획서 '(5)수행기관별 업무분장' 내용이 동일함.
3.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p.15~17 개발내용, 그림이 검토대상 과제 사업 계획서 p.41, 45 개발내용, 그림이 동일하여 핵심 개발내용이 중복됨.
4. 검토과제, 검토대상과제의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개발내용, 방법이 일부 차이 있으나 검토과제, 사업계획서 16, 17페이지 그림 라. 검토대상과제 사업계획서 41페이지 인용 그림이 동일하여 개발 방법 차별성이 부족함.

2. 판결요지

(2) 각 위원회의 위원들은 짧게는 7년에서 길게는 34년에 이르는 관련 기술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의신청 중복성 평가위원회의 위원들 전원이 만장일치로 중복성 평가를 하였다. 이와 같은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는 존중되어야 한다.

(3) '중복'의 사전상 의미는 거듭하거나 겹치는 것이라는 뜻인 점, 피고가 2013년 및 2014년 과제 공고에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었거나, 이미 다른 기업이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업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제외대상에 해당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관계 법령상의 '중복'이라는 용어가 두 과제의 완전한 동일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4) 2014년 과제의 목표는 궁극적으로 선박에 탑재할 수 있는 PMS를 개발하여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을 개발하는 것인데, 2013년 과제의 결과물은 선박용 PMS를 육상에서 시연하는 것으로써 2014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간과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실무적 포인트

(1) 사업계획서 기재내용을 기준으로 중복성 판단

(2) 검토대상 2개의 과제 내용이 완전히 동일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일부분 중복되는 경우에도 후행 과제를 중복과제로 판단함

(3) 선행 과제의 결과물을 전제로 하는 후행 과제에서 선행 과제 결과를 후행 과제의 전제 사실이 아닌 과제의 중간 과정으로 기재한 한 경우, 그 중간 과정도 후행 과제의 내용에 해당하므로 그 부분이 일부 중복되어 중복 과제로 판단함.

첨부: 대전지방법원 2018. 3. 28. 선고 2017구합101736 판결

연구개발경력 이공계변호사, 이의신청, 행정소송, 집행정지.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